

# 회비 규정

2022. 02. 10. 개정

2021. 12. 06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 라 한다) 정관 제41조1호에 의거 하여 체육회의 회비 납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비)** 회비의 분담액은 각 호와 같고 당연직 임원은 면제한다.

1. 회 장 : 년 1,000만원 이상

2. 수석부회장 : 년 500만원 이상

3. 부 회 장 : 년 200만원 이상

4. 이 사 : 년 120만원

5. 회원단체 회비

가. 종목단체 : 정회원단체 년 60만원, 준회원단체 30만원

나. 동체육회 : 년 20만원

6. <삭제 2022.00.00>

**제3조(회비의 조정)** ① 회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 하여야 한다.

② 당해 회계연도 7월 이후 선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2조 회비를 1/2 선납하여야 한다

**제4조(회비의 납입)** ① 회비는 당해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내에 납입하거나 매월

분납하여야 한다.

- ② 보선 또는 새로 선임되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 전 이력서와 회비를 선납하여야 하며, 이사회 미승인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.

**제5조(회비의 사용)**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1. 종목단체 및 직원에 대한 격려금 또는 포상금[별표 1]
  2. 사무국 직원의 법정부담금(사무국장 포함)
  3. 각종 위원회 업무수행 실비(위원회 참석수당 등)
  4. 체육회 사무국 운영 또는 사업비
  5.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결정한 사항
  6. 체육회 예·결산 후 감사 실비 지급
- ② 체육회 사무국장 대회 업무추진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**제6조(회비 미납자에 대한 징계)** ① 회비 미납자는 이사회에서 표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한다.

- ②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이 초과됨에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임원은 제명조치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, 정회원단체는 제4항을 준회원단체는 제5항을 적용한다. 단, 사무국은 미납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납부안내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)으로 하여야 하며, 3회차에는 제명 조치됨을 명기한 후 통보한다.

- ③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제명된 자는 체육회에 5년간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, 총회에 대의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.

- ④ 정회원단체인 종목단체의 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해당 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되며, 체육회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해 해당 단체

임원은 지정 즉시 당연 해임된다. <개정 2022.02.10>

⑤ 준회원단체인 종목단체의 회비가 미납되었을 시 해당 종목단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정단체로 지정한다.

**제7조(회비 지출업무 처리)** ① 회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내부분서 및 지출결의서
2. 증빙서류(계좌입금증, 영수증, 견적서, 타견적서 등)

② 격려금과 포상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현금 지출시에는 수령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회계구분)**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 적립하여 운용한다.

**제9조(세부사항)**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 **부 칙(2021. 12. 06.)**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(2022. 02. 10.)**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격려금 및 포상금 기준표

구 분	지 급 액
1. 격려금	◦ 체육인의 밤 우수단체 격려금 : 단체별 500,000원 이내
	◦ 체육인의 밤 우수직원 격려금 : 개인별 200,000원 이내
	◦ 정회원단체 대회 개최시 : 500,000원 이내
	◦ 준회원단체 대회 개최시 : 300,000원
	※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(배) 활성화를 위해 종목의 규모 및 활성화에 따라 차등지원 함
2. 기타 포상금	◦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통한 기타포상금